

식자재 유통 및 Horeca 관련 경소상 발굴을 위한

중국 식품 박람회 K-Fish 수산관 및 상담관 운영

1. 과업개요

가. 용역명 : 중국 식품 박람회 K-Fish 수산관 및 상담관 운영

나. 사업개요

사업명 : 중국 식품 박람회 K-Fish 수산관 및 상담관 운영

- “창사 국제식품요식업 박람회” 연계 수산식품 B2B 시장 개척

사업기간 : 2024.9.06.~9.08

홍보대상 : 박람회 참관 내방객(외식프랜차이즈 업계, 호텔 및 레스토랑 수요처 등)

전략품목 : 해삼, 김, 미역, 어육소시지, 게맛살, 통조림 등 수산식품 전반

주요사업 내용

- (수산식품관 운영) 대중국 주력 수산식품 및 식재료 유통 가능한 신제품 발굴 및 현장 전시 홍보
- (B2B 거래알선) 박람회 주최측을 통해 식품 유통업계, 외식업계, 요리협회 등 관련 산업 종사자 초청 및 B2B 상담 지원으로 수출 확대 기여
- (메뉴개발 홍보) 소비자변 확대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레시피 개발 및 현장 시연회 추진
- (수산요리관 운영) 호텔, 수산물 전문 레스토랑 등 수산식품 취급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채널을 공략하여 박람회 현장 수산제품 요리관 운영 및 품평회&상품설명회 장소 마련
- (미디어홍보) 레시피 사후 확산을 위하여 요리 관련 인플루언서 섭외 인기 동영상 플랫폼 내 홍보영상 제작 배포

다. 세부추진계획

본 과업 관련 참가 규모 : 108m²(12개부스)

- 인포데스크 & 수산식품 전시 홍보 시연(18m²) , 수산식품 요리관(36m²) 상담부스 (54m²) 6개사 구성

- 전체 박람회 규모 : 100,000m, 4,000개 부스, 1,800개 업체, 22만명 참관

* 중국 상무부 중점 육성하는 중국 국내 식품 및 요식업 박람회, 총 8개 관, 4,000개 부스, 22만명 참관 예상

* 박람회 전시관 구성(8개관) : 요식업 식자재 및 밀키트 재료 전시관(2), 시종합전시관(1), 전국종합 전시관(1), 프랜차이즈전시관(1), 스마트요식 및 조미료 전시관(1), 수입식품전시관(1), 주방 설비 및 호텔 용품 전시관(1)

[수산식품 전시존] aT 수산식품 전시 홍보관 마련하여 시음시식 활동 전개

- 전시홍보관 내 요리 쉐프 초청 한국 수산식품을 활용한 요리 시연 추진
- 김스낵, 조미김, 게맛살, 어묵 등 티몰한국관 수산식품 주문고객 대상 현장 기념품 배포

[B2B 거래알선] 내륙 진출 희망 수산식품 취급업체 선정하여 상담부스 제공을 통한 B2B 판로 개척 도모

- 내륙시장에 생소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마켓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하여 맞춤형 수요충 발굴 지원
- 업체당 1부스(9m²) 배분을 통한 독립 상담장 구성으로 참가업체 브랜드 홍보 및 내방객 방문 제고

[메뉴개발] 소비자변 확대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레시피 개발 및 현장 시연회 추진

- 해삼, 미역, 게맛살, 통조림 식품 등 식재료로 사용 메뉴 개발을 통해 현장 요리 시연회 추진

[수산요리관 운영] 관련 업계(외식협회, 전문 레스토랑 등) 초청을 통한 품평회&상품설명회 추진 및 현장 수산제품 요리관 운영

- 행사장소 : 수산박람회 품평회 장소 설치(36m²)
- 초청대상 : 박람회 내방객(호텔 및 수산 전문 레스토랑 MD, 식자재 유통 도소 매상 등 사업체) 약 20명 내외
- 초청방법 : (사전등록) 주최측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 활용하여 요식업, 프랜차이즈 등 관련 업계 사전 초청
(현장등록) 박람회장 방문 외식업 전문 관람객 대상 현장 초청

- 진행방식 : (전시존) 수산 식재료 및 수산 가공식품 전시 및 홍보
(품평회 및 상담회) 한국산 수산요리 품평회 및 납품 상담회 운영
* 품평회 추진 품목 : 참가 업체 품목 위주 및 수출업체 수출 유망 품목

- [미디어홍보] 레시피 사후 확산을 위하여 전문 요리 관련 인플루언서(팔로워 30만 이상) 섭외하여 현장 홍보 및 동영상 플랫폼 내 홍보영상 제작 배포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4. 10. 31(목)까지

- 과업예산 : KRW 75,000,000원

2. 대행용역사 선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총액 확정계약)

< 기준법령(한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aT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단, 코로나에 따른 공공계약 업무처리 기준 안내에 따라 유찰시 시답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변경 가능 (국가계약법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나. 제안서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가격 평가 포함)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기술 및 가격협상 실시 → 계약상대자 선정 → 계약체결

다. 사업자 평가방법

- 평가위원 : 평가위원회(내부 2명, 외부 3명) 구성
- 평가방법 : 제안서 기반 PT 평가 실시 후 평가위원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적용

- * 업체별 30분 내외(발표 2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 PT 일정 별도 공지 / 블라인드 오프라인 평가
- *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발표 자료는 반드시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평가항목 : 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 관리기술 등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 득점한 자
- 협상적격자의 종합점수(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고득점자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 기타사항

- 득점이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별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역시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의해 본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고 추진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상의 내용을 우선하되,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총액 확정 계약)
- * 단, 코로나에 따른 공공계약 업무처리 기준 안내에 따라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변경 가능
- 사전공개기간 : 2024. 5. 22(수) ~ 2024. 5. 26(일)
- 공고기간 : 2024. 5. 27(월) ~ 2024. 6. 21(금) 18:00 마감
- 공고처 : aT 중국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www.atchina.org.cn)

- 제출서류 : 용역수행 제안서 책자 6부, 입찰서 및 견적내역 1부, 영업집조 사본 1부, 회사소개서 1부(A4용지 1장 이내), 최근 3년간 오프라인 행사 수행 실적(금액포함) 자료

* 제안서는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업체명 등 식별 가능 일체 표식 금지

** 입찰서 밀봉 필수

*** 참고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제안서상에 기입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 효력으로 간주 하므로 책임 수행과업 범위 내 작성(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aT 다렌지사로 직접 제출

- 제출처 : 다伦市 중산구 중산로 136호 1302실

- 문의처 : aT 다렌지사 김성진 대표, 오설매 과장(+86-411-3960-3362)

마. 제안 발표,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발표 미 참석 시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은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공사는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현장 작업 등 기타 발생하는 고용원의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바. 기타 사항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 정부 및 우리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 요청사항

구 분	내 용
수산식품 홍보관 및 바이어 상담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기간 및 장소 : '24. 9. 6 ~ 9. 8 (3일간) / 창사국제회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전일 홍보관(전시, 홍보, 상담) 설치 완료 必 ▷ 수산홍보관 규모 : 18m²(2개 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관 구성 : 인포데스크, 수산식품 전시대, 시음시식 음식 조리대 ▷ 바이어 상담관 규모 : 54m²(6개 부스 규모, 6업체 / 업체당 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존, 업체별 전시대, 상담테이블, 의자, 필요시 냉장고 임대, 짐 보관 창고 ▷ 수산요리관 규모 : 3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쉐프 쿠킹 플레이스, 품평회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구비
장치 및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홍보관 및 바이어 상담관은 목공구조로 통일감 있게 구성
수산식품 전시존 운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홍보영상 송출(TV), 수산식품 전시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제품은 aT와 협의된 제품으로 대행용역사에서 구매 및 디스플레이 ▷ 요리사 섭외 및 현장 수산식품 간편조리로 현장 시음시식 추진(300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식제품 QR 설문조사 추진 ▷ 이벤트 참여 안내 및 증정품 수령
B2B 거래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홍보관과 바이어 부스(각 9m²)는 통일감 있게 구성하되, 업체 보유 디자인물 적용 요청시 반영(aT-대행사-업체 3자간 협의하여 부스 내부 디자인 결정) ▷ 참가 제품 특성상 냉동, 냉장고 필요 시 렌탈 필요 ▷ 바이어에 상담일자 배포, 일자별 상담 기록 내용 DB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부스에는 인력 배치할 필요는 없으나, 수산홍보관 운영요원 교육을 통하여 상담일자 수거 및 배포 등 업무 추진
수산식품 요리관 운영(36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요리관 대형 스크린 준비 및 현장 요리 과정 전파 ▷ 36m² 오픈형 구조로 요리쉐프 쿠킹 플레이스, 품평회 테이블, 의자 등 비치 ▷ 전문 요리사 섭외 및 수산제품 활용 외식업체 공유 가능한 레시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외 요리사를 통하여 레시피 작성 & 메뉴 전파를 위한 홍보 이미지 파일 제작 (카달로그 제작) ▷ 전문 업계 초청을 통한 현장 품평회 및 설명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협회, 외식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구매 MD 등 전문업계 초청 ▷ 품평회 및 설명회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 제안요청서 세부추진계획 방향성에 맞도록 제안서 작성하고, 작성된 과업 이외에 해당 프로젝트와 연계된 aT 요청 사항 적극 수행 必

구 분	내 용
현장운영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운영 스케줄표 작성 등 행사 전반 운영 기획 ▷ 행사시 필요한 비품은 사전 준비(임차 또는 구입) ▷ 행사 운영 관련 인력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시연 전문가, 운영스텝 등 ▷ 전시제품, 시음시식 물자 등 구입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별 세부 일정 및 홍보·전시 준비상황 체크 ▷ 과업별 책임 인력 지정
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참가 종합성과(계량, 비계량) 등을 담은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지표 : 행사기간 내방객 수, 바이어 상담일지 정리(상담건수, 상담액, 주요 반응 등) ▷ 정산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증빙 인정 서류 : 정식发票, 인보이스(송금증 포함), 영수증 등 * 세부산출내역서와 지출항목은 순번대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 세부추진계획 방향성에 맞도록 제안서 작성하고, 작성된 과업 이외에 해당 프로젝트와 연계된 aT 요청사항 적극 수행 必

4.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협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과업관리 책임자는 타 행사 겹직 금지)
- 본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aT”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aT”가 소유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aT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을 교체하지 않아야 함. 단, 퇴사 또는 장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고,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서의 사업비는 인건비, 제세(부가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홍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aT”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협력(대행)업체, 내용 등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계획 승인

- “계약상대자”는 장치계획을 수립하여 “a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반드시 “aT”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다. 시행

- “계약상대자”는 이 장치설비의 추진을 위하여 “aT”의 승인을 받은 장치 계획서에 따라 장치를 시행함
- “계약상대자”는 장치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aT”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장치계획이 적절치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aT”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차질이 생겼을 경우 “aT”와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aT”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사고 발생시
 2. 시설물 파손, 손괴, 망설 시

- 3.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시
 - 4. 용역계약 내용과 관련된 근무자의 부당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물(상담부스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행사안전보험 가입 의무)
- 라. 지도·감독 등**
- “aT”는 장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aT”는 필요한 경우에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aT”는 행사와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마.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이 장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aT”가 제 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aT”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바.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계약체결 시 세부산출내역서 비목별 승인금액 이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비목별 승인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aT의 사전승인 필요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aT”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 저작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양자가 소유함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아. 보안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종료 이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함
- 자.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볼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aT”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감염병 확산 등 외부요인에 따른 영향으로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중단,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경우 “aT”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행사 2개월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수준이거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포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지속되는 등 국내외 CV19 영향이 지속되어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경우

- 불가항력 중 “정부의 조치”로 본 용역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부기관의 서면 확인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aT”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불가항력에 따른 이행불가가 인정될 경우 “과업수행사” 와 “aT”는 본 용역 건의 실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정산 진행 가능
 - * 제안서 제출 전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입찰 참여
 - *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장치운영사, 참여인력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동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차. 사업이행보증 및 정산지급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종료 후 대금은 일시급으로 지급함
- 계약체결주체는 aT 본사이나 계약은 aT 다롄지사에서 체결하고, 사업비는 본사담당부서에서 송금당일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금액(KRW)에 해당하는 미달러화(USD) 또는 위안화(CNY)를 “운영주체” 계좌로 송금
 - 단,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은 운영주체가 부담
- 사업비는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검토후 지급
 - aT 정산기준에 의거 증빙(영수증 및 송금증 등) 제출 필요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표

과제명	내륙지역 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 참가 B2B 판로개척 마케팅 운영				
업체기호			평가위원장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2024년 월 일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A	B	C	D	E
사업수행계획 (20)	○ 과업 이해도, 제안 범위 및 요청내용과의 일치성	10	9	8	7	6
	○ 과업별 추진계획·일정의 적정성 및 달성가능성	10	9	8	7	6
기술지식능력 (30)	○ 제작 프로세스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10	9	8	7	6
	○ 기획 및 디자인 등 내용 구성의 총실성	10	9	8	7	6
인력조직 관리기술 (10)	○ 제안내용 및 제작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실효성	10	9	8	7	6
	○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행사 전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력 배치 등 관리 효율성	10	9	8	7	6
안전관리능력 (10)	○ 현장 운영시 발생 가능한 안전 및 재난관리, 비상 대책 해결 방안 등	10	9	8	7	6
사후관리 (10)	○ 사후발생 가능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체계성	10	9	8	7	6
종합의견						
총 점 (80점)						득점 점

* 심사방법 : 배점 범위 내에서 절대평가(해당 점수에 ○로 표시)

등급	평 가 기 준	등급	평 가 기 준
A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경우	B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C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D	평가기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경우
E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이 매우 결여 또는 부족할 경우		

<붙임 2>

가격입찰서

건명 : 내륙지역 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 참가 B2B 판로개척 마케팅

입찰금액(KRW) : 금 원정(₩)

※ 세부 산출 내역 별첨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명의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귀 공사가 제시하는 계약 제반조건을 이의 없이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 체결코자 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4. .

상호 :

주소 :

대표자 : (인)

<붙임 3>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구성 및 작성순서

* 해당과업의 내용별 필요성에 따라 조정가능

구 분	작 성 지 침
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업체(기관) 일반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포함
1. 제안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차별적 우위, 관리적 특징,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사업수행 역량)
2.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표 및 비전 설정 ○ 사업추진 방향 및 성공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참가 3D 설계도를 포함한 디자인 - 부스 내 각 섹션별 디자인 포함
구 분	작 성 도 면
3D	Perspective, Front View, Side View
Layout	Top View, 동선계획, 부류별 배치안
수산홍보관 및 바이어부스 (108㎡)	인포데스크 포함 수산홍보관 – Perspective, Front View, Top View 참가 바이어 전시존 – Perspective, Front View, Top View 수산요리관 – Perspective, Front View, Top View
II.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홍보관 및 바이어 부스 운영 총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서 상의 세부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 운영 방향 작성 ○ 벤더 발굴 및 상담지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현지 유관업체 기업 상담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 (바이어 상품정보 QR 페이지 작성 등) ○ 현장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홍보관 모객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 성과 집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 비계량 부문 사업 목표 수립 및 목표 도달 방안 - 세부추진계획서 내 성과측정계획 각 항목별 지표 집계 방안 ex) 상담 실적 측정, 홍보관 방문 효과 집계 방안 등 ○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 (홍보효과 성과 측정 및 분석, 보고계획) ○ 재난, 안전사고 등 방지 대책 ○ 과업별 추진일정 및 운영관리 계획
3. 과업수행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성과 달성을 위한 효과적 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성과관리계획, 성과목표 설정의 적정성 ○ 사업예산 배분 계획
4. 성과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성과 달성을 위한 효과적 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성과관리계획, 성과목표 설정의 적정성 ○ 사업예산 배분 계획

※ 발표자료 내에는 제안사명 등 제안사 식별가능한 정보 기재 일체 금지(블라인드 처리)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규하

【별지 1】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제11조 관련)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2024년 00월 00일 00시 수요 “내륙지역 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 참가 B2B 판로개척 마케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내륙지역 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 참가 B2B 판로개척 마케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 전문인력 POOL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휴대폰 전화번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2】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제8조 관련)(개정 2019. 4. 8)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본인은 공사에서 실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입찰 정보
 - 건 명 : 내륙지역 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 참가 B2B 판로개척 마케팅
 - 입찰 일시 : 2024년 00월 ○○일 / ○○:○○
 - 장 소 : 다롄지사 사무실
- 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의 기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①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②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③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④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평가위원으로서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①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고 관련정보로 자신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② 제안서 평가 관계자로부터 편의·향응·급품 등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등 금지
 - ③ 기타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평가위원 선정 시 기피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평가에 참가할 경우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되고 공사의 입찰 평가에 처분기간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제8조 관련)(신설 2022. 5. 19)

(뒷 쪽)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날()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1)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2) 사적이해관계	
	(3) 관련 직무		
<p>[]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p>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거나 전 2년 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거나 전 2년 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之内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之内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협력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④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복역판정검사, 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직무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증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발·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4.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긴축사업」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개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별지 4】 제안서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제5조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본인은 제안서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평가분야 :

- ## 2. 사유(간략히) :

3. 사퇴 희망일자 : 년 월 일부터

일
정
기

소속:

직 위 :

성명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제3조 관련)(개정 2021. 11.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제안서평가위원회(Pool)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관련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을 추천하고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관리, 제안서 평가이력, 고지사항 전달 등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전화번호	- 직장 : - 핸드폰 :
성별		이메일 주소	
소속	- 기관명 : - 부서명 :	직위	
평가가능 지역 ○ 표시 *복수체크 가능	나주(본사)·광주·전남,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 전·충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제주, 전국	평가가능 분야 ○ 표시 *복수체크가 능	연구용역, 흉보대행, 컨설팅, 정보조사, 교육대행, 전산용역, 건축·장치, 도시·지역·건축계획, 전통발효식품, 국영무역, 외식 정보분석, 기타()

* 평가위원으로 추천되어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신 경우, 평가위원 추천 이력, 제안서 평가 이력 정보들이 생성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으로 추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죠 웨 일 성 봄 : (인/서명)

【별지 6】 기술능력 평가 의견서(제11조 관련)

<참고>

[기술능력 평가의견서]

*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번호	평가점수 부여 사유

평가일시 : 20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평가 위원 교섭 표준 문안

- ○○○ 위원이십니까?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 (가족이 전화를 받을 경우) : ○○○ 위원님 댁이시지요?
 - . ○○○ 위원님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 (심의위원과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 위원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월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지요?
(참석여부확인)
 - (참석이 가능하시다면) 도착장소는
 - . 우리 공사(또는 ○○○○)으로 00:00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 . 이번 평가 수당은 ()만원입니다.
 - “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 “참석이 불가능하시다면 본 전화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평가위원 통화기록부

위원명	전화번호	전화시간 (시.분)	수신자 인적사항	참석 여부	불참사유	비고

통화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